



제 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검열 등 금지 및 표현의 자유 보장>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64호)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58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검열 등 금지(안 제44조 제4항 신설 등)	4
2.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안 제44조의11 신설)	8

I. 제안경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7564호)

가. 발 의 자 : 고동진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5. 1. 16.

다. 회 부 일 : 2025. 1. 17.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7758호)

가. 발 의 자 : 고동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 23.

다. 회 부 일 : 2025. 1.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7564호)

최근 사회적으로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 또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명백한 헌법적 가치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다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검열하거나 감시, 조사 및 감청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정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및 제70조의3 신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7758호)

최근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

한편 대한민국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통념상 ‘표현의 자유’로 해석하고 있음.

미국은 1791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의회가 국민들의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핵심 가치로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강조하고 있음.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1월 20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모든 검열을 방지하겠다는 행정명

령까지 발동시킨 바 있음.

결론적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소수의견 존중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및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바, 이들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법치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일반법률에 제대로 반영하는 취지에서, 누구든지 국민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표현의 자유’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반드시 보장되도록 하여, 1) 부당한 검열로부터의 개인과 사회의 보호, 2) 국민 개인 정체성 확립 및 다양한 관점의 존중, 3)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의로운 방향으로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 등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Ⅲ. 검토의견

1.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검열 등 금지(안 제44조 제4항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누구든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검열하거나 감시, 조사 및 감청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4조 제4항).

- 안 제44조 제4항을 위반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0조의3).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누구든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검열하거나 감시, 조사 및 감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제70조의3(벌칙)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를 검열하

현행	개정안
	거나 감시, 조사 및 감청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검토사항

- 최근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확산하는 행위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개인의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검열하거나 감시, 조사 및 감청(이하 “검열 등”)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려는 것임¹⁾.
-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검열 등의 금지에 대해서는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법률로서²⁾, 동법 또는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의

1)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청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³⁾.

- 동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⁴⁾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이 때 ‘감청’이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기통신의 음성·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등의 행위로서⁵⁾,

개정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의 검열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전기통신의 감청에 포함됨.

○ 따라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개정안의 취지가 상당 부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3)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5. (생략)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4)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성·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성·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검열 등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이용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가 모호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열 등을 금지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⁶⁾,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금지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부족하며,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에 해당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의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유사함을 고려할 때, 「통신비밀보호법」의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6) 이용과 관련된 정보에는 과금에 필요한 이용내역, 상품구매내역, 배송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정보들도 존재한다는 의견임

2.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안 제44조의11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누구든지 국민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4조의11 제1항).
- 제1항의 표현의 자유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보장되어야 함(제2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4조의11(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① 누구든지 <u>국민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표현의 자유</u>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표현의 자유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보장되어야 한다.

다. 검토사항

-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⁷⁾.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란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함⁸⁾.
- 개정안은 국민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됨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 입법례를 살펴보면, 「방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표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개별법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두는 사례가 있음⁹⁾.
-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정보통신망법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의 내용으로 의사표현·전파의 자유, 정보의 자유, 신문의 자유 및 방송·방영의 자유 등이 있고,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그 매개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7)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 헌재 1989. 9. 4. 88헌마22

9)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 언론은 정보원(情報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제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¹⁰⁾.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를 매개로 하는 표현의 자유 또한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¹¹⁾.
- 방송통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법률에 규정하여 다양한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고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보장의 예외적 사유를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권리침해정보·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 제한이 포섭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5장(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보다는 법의 제정 목적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제1장(총칙)으로 조문 위치를 이동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10) 헌재 1993. 5. 13. 91헌바17

11)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에 대한 내용규제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으로 보고 있음(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참조)

개 정 안	방송통신위원회 수정의견
<u>제44조의11</u>(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① 누구든지 국민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표현의 자유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u>다른 법률</u>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보장되어야 한다.	<u>제3조의2</u>(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u>이 법 또는</u> <u>다른 법률</u>----- -----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의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에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기 위한 조문을 별도로 규정한다면, 법체계를 고려할 때 제5장이 아닌 제1장(총칙)에 명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